

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

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25일 이내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

① 신고인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
② 수탁자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	제조방식	<input type="checkbox"/>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(OEM) <input type="checkbox"/> 주문자 개발 제조(ODM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제조방식 설명)

신고 대상 제품	제조·수입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	품목
	제품명		용도
	제형		중량·용량·매수
	제조국명 (수입의 경우)		제조회사명 (수입의 경우)
	신고번호 (갱신의 경우)		유효기간 (갱신의 경우)
	그 밖의 신고사항(제품출시에정일 등,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)		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
 제10조제5항

제5조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기준 적합확인 사항을 신고 합니다.
 제5조제6항 변경신고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
첨부서류	<p>1. 신고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</p> <p>가.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(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그 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</p> <p>나.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</p> <p>다. 함유물질의 성분,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</p> <p>라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건본</p> <p>마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·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 <p>2. 변경신고의 경우: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p>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① 신고인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의 신청인과 동일해야 합니다.
- ② 수탁자란은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신고인이 위탁자인 경우에만 적되, 수탁자란에 작성해야 할 수탁자 정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.

처리절차

